

## < 일임형ISA 약관 개정대비표 >

1. 대상 약관 :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약관
2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3. 개정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비 고
<p><b>제 1 조 &lt;생략&gt;</b>  <b>제 2 조 (용어의 정의)</b>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 이 조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자본시장법')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,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,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(이하 "관계법규등"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1. "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"란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계좌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.</p> <p>가. 1 명당 1 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</p> <p>나.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로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와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일 것</p> <p>다.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이 정하는 재산으로 운용할 것</p> <p>라. 계약기간이 3 년 이상일 것</p> <p>마. 총 납입한도가 1 억원(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</p>	<p><b>제 1 조 &lt;좌동&gt;</b>  <b>제 2 조 (용어의 정의)</b>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 이 조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(이하 '자본시장법')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, 한국금융투자협회 업무규정, 한국거래소 업무규정 등(이하 "관계법규등"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1. "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"란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계좌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.</p> <p>가. 1 명당 1 개의 계좌만 보유할 것</p> <p>나.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명칭으로 개설한 계좌로서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일임업자와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여 개설한 계좌일 것</p> <p>다. 「조세특례제한법」이 정하는 재산으로 운용할 것</p> <p>라. 계약기간이 3 년 이상일 것</p> <p>마. 총 납입한도가 1 억원(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 따른 재형저축 또는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는 재형저축 및</p>	

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)이하이고, 연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 
※2천만원 x [1 + 가입 후 경과한 연수 (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우에는 4년으로 한다)]

2.~9. <생략>

### 제3조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)

① <생략>

② 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400 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, 400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에도 불구하고 100 분의 9 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.

1.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 천만원 이하인 거주자(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)
2.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 천 5 백만원 이하인 거주자(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 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)
3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에 따른 농어민 (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)

③ <생략>

### 제4조 <생략>

제 5 조 (업무의 위탁) ① 회사는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 3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)이하이고, 연 납입한도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일 것  
※2천만원 x [1 + 가입 후 경과한 연수 (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인 경

우에는 4년으로 한다)]-누적 납입금액

### 제3조(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)

① <좌동>

② 계좌에 가입한 거주자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이자소득등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400 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, 400 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「소득세법」에도 불구하고 100 분의 9 의 세율을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.

1.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 천만원 이하인 거주자(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)
2.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 천 8 백만원 이하인 거주자(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 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)
3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에 따른 농어민 (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제외한다)

③ <좌동>

### 제4조 <좌동>

제 5 조 (업무의 위탁) 회사는 투자일임업무와 관련하여 자본시장법 및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영위하는 업무의 일부를 제 3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3항제5호 개정 반영

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개정 반영 서민형, 농어민형 종합소득기준 3천8백만원으로 완화

<p>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일임계약의 체결과 해지, 투자일임재산의 운용업무를 위탁할 수 없다. 다만 투자일임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, 원화자산인 투자일임재산 총액의 100 분의 50 범위 내에서의 운용업무,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분석 업무 및 투자일임재산에 속한 증권, 장내파생상품, 「외국환거래법」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 주문업무는 위탁할 수 있다.</p> <p><b>제 6 조~제 24 조 &lt;생략&gt;</b></p> <p><b>&lt;부칙&gt;</b>  이 약관은 2021년 3월 25일 가입분부터 시행한다.  단, 제 15 조제 2 항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 137 조의 2 개정 시행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부터 시행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신설&gt;</b></p> <p><b>[별지] &lt;생략&gt;</b>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삭제&gt;</b></p> <p><b>제 6 조~제 24 조 &lt;좌동&gt;</b></p> <p><b>부칙</b>  이 약관은 2021년 3월 25일 가입분부터 시행한다.  단, 제 15 조제 2 항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 137 조의 2 개정 시행 이후 개시되는 과세연도분부터 시행한다.</p> <p><b>부칙 1</b>  이 약관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p> <p><b>[별지] &lt;좌동&gt;</b></p>	<p>자본시장법 제42조 개정 반영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설</p>
---	---	---